제22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**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**

2023년 4 월 18 일

여 수 시 장 인

여수시 조례 제1871호

붙임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여수시 조례 제1871호

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제4호”를 “제4호 및 제5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극심한 가뭄으로 물 절약이 필요한 경우 가뭄해제시까지 다음 각 목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 이 경우 감면금액은 1개월 후에 정산액으로 반영한다.

가. 전년도 동월 대비 절감률의 10퍼센트 이하: 해당 절감액 전액

나. 전년도 동월 대비 절감률의 10퍼센트 초과 40퍼센트 이하: 해당 초과분의 10퍼센트씩 감면(최대 13퍼센트까지)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0조(요금 등의 감면)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업종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, 감면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 비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하여 감면한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감면은 다른 호와 중복하여 감면할 수 있다.	제40조(요금 등의 감면) ① --. ---- 제4호 및 제5호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5. 극심한 가뭄으로 물 절약이 필요한 경우 가뭄해제시까지 다음 각 목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 이 경우 감면금액은 1개월 후에 정산액으로 반영한다. 가. 전년도 동월 대비 절감률의 10퍼센트 이하: 해당 절감액 전액 나. 전년도 동월 대비 절감률의 10퍼센트 초과 40퍼센트 이하: 해당 초과분의 10퍼센트씩 감면(최대 13퍼센트까지)
5. (생 략)	6. (현행 제5호와 같음)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